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

발 의 자 : 김성원 · 김선교 · 박성훈
이인선 · 박충권 · 고동진
송석준 · 구자근 · 김용태
정동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 구급차 · 혈액공급차량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음. 경찰용 자동차 중 교통단속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 등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모범택시를 운전하는 모범운전자는 심야시간대 범죄 예방, 승객 안전 확보, 불법영업차량 식별, 교통혼잡 지역의 질서 유지 등 공공교통영역에서 일정 부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을 도와

교통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표시장치 사용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경광등 등)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공공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란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또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공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특례) ①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에는 제29조제6항에 따른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설치·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u><신설></u> 23. ~ 3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22. (현행과 같음) <u>22의2. “공공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란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또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u> 23. ~ 34. (현행과 같음) <u>제30조의2(공공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에 대한 특례) ① 공공교통의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를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에는 제29조제6항에 따른 경광등 등 표시장치를 설치·사용할 수 있다.</u>